# 1997年度 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

(1997. 12. .)

運營委員會

### 1997年度 行政事務監查結果 報告書

### 1. 監查의 目的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사무국의 운영실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의회업무가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1998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심사하기위한 자료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 2. 監查期間

〇 1997. 11. 26. (수) [1일간]

### 3. 監查實施 對象機關

○ 마포구의회사무국

### 4. 監查實施 經過

가. 감사반 편성

7.3	- 강- 사 위 · 원	위상기원	감사장소	사무직원
운 영 위원회	[위원장] 김 종 열 [간 사] 한 대 운 (위 원) 김 성 환, 김 영 식, 유 동 균, 이 진 표, 정 성 우, 한 수 균, 홍 성 환	마포구의회 사 무 국	운 영 위원회실	임민상

### 나. 감사일정 및 장소

9 2	eners:	감사장소	3 시 왕 월 · 비 고
'97.11.26. (今)	마포구의회 사 무 국	운 영 위원회실	증 인 선 서,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

### 5. 主要監查 實施内容

- '96. '97년도 예산 불용현황
- 청사관리와 관련한 유지비및 일용인부임 지급현황
- 일반업무추진비중 행사 및 사무국업무활동비 집행내역

### 6. 監查結果 處理意見

### 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현재의 피복비 예산으로는 제대로 된 피복을 구입할 수 없는 실정인 바,속기사 피복비 예산을 현실화하든지 예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 매년 피복을 구입하지 않고 2년에 한번씩 피복을 구입하는 방안등을 강구하여 속기사가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
- 의회청사내 각충 계단에 안내판을 제작, 게첩하여 의회를 찾는 내방인이 쉽게 충별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바람.
- 우리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인식하여 앞으로 모든 예산집행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람.

### 나. 처 리 의 견

○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사무 국장이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98. 1.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함

# 1997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1997. 12. .)

總務財務委員會

### 1997年度 行政事務監查結果 報告書

### 1. 監查의 目的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모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합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1998년도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 2. 監查期間

1997. 11. 26 (화) ~ 1997. 12. 2 (화) [7일간]

### 3. 監查實施 對象機關

- 마포구청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 동사무소 (망원1동, 신수동, 노고산동)

### 4. 監查實施 經過

가. 감사반 편성

4 4	かるまた	제상기관	감사장소	사무직원
총무재무	[위원장] 김 효 철 [간 사] 김 세 창 [위 원] 김 성 환, 김 종 열,	기 획 실, 총 무 국,	총무재무 위원희실	임민상
위원회	김 평 전, 심 재 창, 유 남 혈, 이 진 표, 정 만 직, 한 수 균	재 무 국, 동사무소	및 동사무소	н С о

##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차	225858	강사장소	강기 방법	비고
97.11.26.   (今)	기획예산담당관, 감 사 담 당 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재무 위원회실	증 인 선 서, 업무보고청취 및 서류감사	
'97.11.27. (号)	총 무 과, 민원봉사과, 사회진홍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총무재무 위원회실	중 인 선 서, 업무보고청취 및 서류감사	
'97.11.28. (급)	재 무 과, 세 무 1과, 세 무 2과, 지 적 과	총무재무 위원회실	증 인 선 서, 업무보고청취 및 서류감사	
'97.11.29. (토)	망원 1 동	망 원1동 사 무 소	증 인 선 서, 업무보고청취 및 서류감사	
'97.12. 1. (월)	시 수 동, 노고산동	신 수 동, 노고산동 사 무 소	증 인 선 서, 업무보고청취 및 서류감사	
'97.12. 2. ( <b>화</b> )		총무재무 위원회실	감사강평 및 종 료	

## 5. 主要監查 實施内容

## 〈區 魔〉

4	4) \$	수 전 각 가 친 기 네 용 :
		ㅇ 홍보 유인물 받간 지출내역(일반수용비)
{ 	기획예산	이 예비비 지출내역
l	4	ㅇ 마포개발공사 추진실태 및 예산집행 현황
		ㅇ 일반업무추진비 예산편성에 및 사용내역
2)	감 사	ㅇ 각종(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조사 내용 및 조치내역
割	I .	· 공무원 부조리 적발및 조치현황
'		<ul> <li>'96. '97년 각종행사 개최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li> </ul>
실		ㅇ 구민의날 행사에 소요된 총체적 예산 및 집행의 세부적 내용
	문화공보	ㅇ 문화재 관리비용(보수비 등) 지출내역
		ㅇ 지역,일간신문 구독 및 예산집행 현황
		ㅇ 마포문화원 예산, 장비 및 기타 지원현황
		ㅇ 홍보활동비 사용내역
		ㅇ 일반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ㅇ 농수산물 유통켄타 개판및 구민의 날 행사시 총 행사비용
		ㅇ 물탱크 에프코팅 및 보수비 사용내역
*	총 무 과	ㅇ 각동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비 지출내역
		ㅇ 구민체육대회 행사경비 지출내역
		ㅇ 차량관리 현황
•		ㅇ 구민회관설립 추진실적 및 특별회계 적립금 현황
무	ા શ	ㅇ 일반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봉사 파	
1	) 	ㅇ 새마율 소득지원금 및 미수금 현황
극	사 회	◦ POOL 보조 지급내역
-	진 흥 과	ㅇ 사회단세 지원에 대한 정액, 잎의보조금 지급현황
	민방위	ㅇ 비상공동정호 관리실태
	재 난	ㅇ 민방위훈련 불참자 조치현황
	관리 과	ㅇ 각동 민방위 장비현황 및 장비구입 소요예산 내역

#	사 별	주요감사 실시대용
쟤	재무과	<ul> <li>각종 공사중 설계변경된 내역과 취득가격 변경후 가격및 업체, 대표자 현황</li> <li>행정재산 관리실태 및 예산집행내역</li> <li>국, 시, 구유지 매각현황</li> <li>'95. ~ '97년도 현금 보관현황</li> <li>수입증지 판매수입 현황('96년, '97년)</li> </ul>
무	세무1과, 세무2과	<ul> <li>'97년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 현황</li> <li>'97년도 종합건설회사(법인)가 신축 준공한 연건평 600㎡ 이상 2,000㎡미만의 건축물의 시공업체 도급계약서 건물별 취득세 및 등록세 부따내역</li> <li>우리구 자립을 위한 세원개발 방안파 종합토지세와 담배세의 비교현황</li> <li>세외수입 부과현황과 징수실적</li> </ul>
	지적과	ㅇ '97년 토지거래신고 실틱

## 〈洞事務所〉

4 4 4	주 B 감 사 십 시 기 용
	ㅇ 각종 공공요금 납부현황
	ㅇ 저소독주민 결연사업실적
	ㅇ 민방위 장비관리실택 및 대장정리 현장
	ㅇ 통장수당 지급현황
망원 1 동	ㅇ 재활용품 매각대금 지급병역
<sub>  </sub> -	ㅇ 공공용 쓰레기봉투 지급, 사용 적정여부
	ㅇ 각종 고지서 송달현황
	ㅇ '97년도 무허가건물 전수조사 현황
	○ 전언통신문 및 FAX 접수현황
	ㅇ 공공요금(전화요금 등) 납부현황
	ㅇ 무허가건물 전수조사 현황
	ㅇ 저소독 주민 결연사업실적
	ㅇ 통장수당 지급내역 및 회의참석부 관리실태
]	ㅇ 재활용품 배각대금 지급현황
신 수 동	ㅇ 민방위훈련통지서 관리실대 및 훈련참석자 통계관리 적정여부
	ㅇ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실적
}	ㅇ 새마율지도자 자녀 장학금지급및 새마율소독지원금 지급현황
	이 반상회 개획및 반상회시 주민 건의사항 처리현황
	이 지방세 고지서 송달 적정여부
	ㅇ 생활체육교실 운영실태
	ㅇ 동사무소 비품출남 운용카드 정리실대
	ㅇ 국가경쟁력 10%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여부 및 실천의지
	ㅇ 지방세목중 종합로지세및 자동차세 징수현황
	이 각종 고지서 남세자 송달 실택
	이 새마을소득지원금 체납현황
	o 소규모 편의사업 시행현황
L 7 11 E	이 민방위훈련통지서 관리실래및 훈련참석자 통계관리 적정여부
노고산동	ㅇ 동사무소 공공용 쓰레기봉투 지급관리실대 ㅇ 도 제합요초지원이원 2시에서
	○ 동 제활용추진협의회 구성역부 ○ 거래 · 지합성호기 노력스다. 및 8 리 · 이 · 이 유교 · 이 2 리 · 이
	○ 거택·자활보호자 노령수당, 목욕비, 이·미용료 지급실대 ○ 노인교통수당 지급실태
	· 그건요공구당 시급설대 · 취로사업 추진실태
	ㅇ 위조가님 작건설데 ㅇ 통장회의 참석 서명부 관리 및 통장수당 지급실태
	○ 공공요금(전화요금 등) 납부현황
L	- 00ma(CHT B C) B T C S

## 6. 監查結果 處理意見 가. 시점및 처리 요구사항

### e e s

#### ■ 監查擔當官

- 민원담당공무원과 일부공무권을 제외한 공무원은 중식시간(12:00 ~ 13:00)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11시 30분부터 식사를 빌미로 자리를 이석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바, 직원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동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인 동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구청 각 부서 감사도 병행실시토록 하여 업무처리와 관련한 부조리 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특히 보건소 아현분소 운영전반에 관해서 는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분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사례와 무사안임한 행정을 하고 있는 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라.

#### ■ 文化公報擔當官

- 예산은 원칙적으로 당초 편성된대로 집행하여야 합예도 예산이 부족하다 하여 부족예산을 구청장 방침으로 타 예산을 전용 사용한사례는 추후 시정되어야 하겠음.(어머니 합창단 관련 예산)
- 구민의 날 생사시 낭비적인 요소는 철저히 배제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므로서 현재의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 망원정 관리를 위해 지도원(방범원)을 2인1조로 3교대 근무하고 있는 바, 지도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1년에 약 1억원이 소요되는 메 사실상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 망원정관리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바람.
- 일반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을 보면 예산집행의 회계처리상 기본적인 요식행위절차가 미흡하니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 魏務局

#### 圖總務課

- 공무원 친절도 자체평가에서 공무원이 전보다는 친절해졌다는 평가 가 나왔지만 아직도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여분이 많으니, 철저한 직원교육으로 대민 친절봉사에 관전을 기하기 바람.
- 중식시간 전직원이 일시에 식사함으로 인해 실제 중식시간에 민원 인이 용무를 볼 수 없는 실점이므로 중식시간 구내식당 배식을 적 절히 안배, 교대식사로록 하고 보안당번제의 철저한 시행과 업무대 행자를 지점, 민원인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중 식시간 이전부터 식사를 이유로 자리를 이석하는 사례가 없도록 전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람.
- 동사무소 감사시 타 동 문서를 서류철에 편철해 놓고 있는 사례는 동직원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고 사료되는 바, 동 직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 통장 회의수당 지급에 있어 각동이 일정한 기준이 없이 구구각색인 바, 통일된 기준안을 마련 동사무소에 시닭토록 조치하기 바람
- 각종 행사및 홍보용 현수막은 거의 대부분 일회성인 만큼 경제사정이 어려운 현 실정을 감안, 현수막 제작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중여 나가도록 하기 바람.
- 동사무소 판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사고를 구에 동향보고 하여 신속하게 사건, 사고를 처리조록 하고 있는 데, 동으로부터 동향보고된 내용중에는 동향보고사항이 아님에도 보고하므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바, 총무과에서는 동향보고의 본취지를 살려 불필요한 동향보고는 지양토록 조치하기 바람

#### ■ 民願奉仕課

○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시 완련 증빙서류 감사결과 예산집행일자가 다르게 정리되는 등 회계관계 서류정리가 미비하니 차후 예산집행과 관련한 모든 증빙서류는 명확하게 작성, 정리토록 하기 바람

#### ■ 社會振興課

새마울소독지원 미수금 정리가 미흡하니, 미수금에 대한 채권확보
 등 새마울소독 미수금정리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民防衛災難管理課

민방위 교육훈련 참석자 통계관리에 있어 교육참석을 99%라는 통계 수치는 신빙성이 없는 통계로 차후에는 정확한 통계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고, 각동 민방위교육훈련 참석필증 관리도 미흡하니 각동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하기 바람.

### 对 排 易

#### ■ 税務1課, 税務2課

- 각종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세수증대에 만 전율 기하기 바람.
- 범인이 제출한 도급금액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할 경우에 각 업체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기 바람

### 洞事務所

### ■望速1洞

- 위법건축물 또는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 사용하였을 경우에 시점조치 하고 구청 주관부서에 시정완료 보고시 근거자료로 사진을 첨부 보고하고 있는 바, 구청에 사진 원부를 발송하고 동에는 사진 복사분을 보관하고 있는 데 복사된 사진은 유관으로 도저히 확인할 없으니 동 보관분 사진도 원 사진을 첨부로록 하기 바람.
- 민방위교육훈련 참석자 참석을 통계가 신빙성이 없으니, 차후 정확한 통계 작성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참석필증 보관상해가 극히 불량하니,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주민의 건의사항, 불편사항, 동사무소 방문 구 간부의 지시사항을 메모하여 처리할 수 있는 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않으니 앞으로는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 즉시 처리 가능한 것은 즉시 처리하고 동 에서 처리 곤란한 사항은 구청에 건의, 처리토록 하는 적극적인 행 정을 추진하기 바람.

#### 2) 新水洞

-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 모든 분야에서 절약하는 의식을 갖도록 하고 특히 공공요금(전화요금 등) 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바, 사적 전화사용을 억제토록 하기 바람.
- 국가경쟁력 10% 늘리기 추진실적이 1건도 없는 바, 모든 행정이 전시행정이 되어서는 안되며 실질적인 행정업무 추진이 되도록 하기 바람.
- 2002년 월드컵 유치 홍보용 현수막을 대형 건물주에게 계첨 토록 유도하고 있는데, 계첩된 현수막을 보면, 이 이식당등의 상호가 표기되므로 인해 공공성보다는 개인사업 PR용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이를 시정토록 하기 바람.
- 지방세 징수실적이 저조하니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세금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고지서도 납세자에게 정확히 송달이 되어야만 채납이 감소될 터인데, 고지서 송달상황표 수령인란을 보면 수령자 날인이 불명확하거나, 아예 송달부에 누구에게 송달했는지 날인조차되지 않은 경우도 있음.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동장은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3) 老姑山洞

- 통장 회의수당 지급시 회의 참석부 서명날인과 지급조서상의 선명 날인이 상이하여 수당지급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정확한 수당지 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재활용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바,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하여 재활용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쓰레기 공공용 봉투가 개인 가정용 봉투로 부정사용 되는 일이 없 도록 하기 바람.

### 나. 건의사항 (동사무소)

- 망원1동 청사 육상에 생활채육교실, 주민편의시설등을 설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축 요망에 대한 건의는 관련부서와 혐의토록 하기 바람. ⇒ 망원1동
- 노고산동 청사부지는 시유지로서 구유지로 이관 요청후 현재 동사무소 옆 여관건물 (대지47평) 등 매입, 복합 동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적극 혐의 요망 ⇒ 노고산동

### 다. 처리의견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및 처리 요구사항은 지방자 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98. 1.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건의사항은 금후의 정책임안, 수립및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其他 特化字项

#### ㅇ 수범사례

- 수범공무원 인적사항

<b>4</b>	4	4 8	발달 및 무	수 별 제 사	<b>B</b> .7.
신수동	별정기급	서길자.	사회,가정복지, 취로	1997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본인 의 담당업무는 물론 동료직원의 업무형조 사항도 책임감있게 처 리하는 등 공무원으로 서 모범이 되고 있음	구 에 서 서울시장프창 상신할 것을 요 청 함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997. 12.

시민보건위원회

###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 운영실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고인을 지적·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며, 효율적인 구정 수행과 자치임법 활동에 활용하고, 1998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 2 감사기간

1997. 11. 26. (수) ~ 1997. 12. 2. (화) [ 7일간 ]

### 3. 감사실시대상기관

- ㅇ 마포구청 (시민국, 보건소)
- ㅇ 등사무소 (공덕제1등, 도화제2등, 상압등)

### 4. 감사실시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

구 분	감 사	위 원	대상 기관	감 사 장 소	사무직원
	위원장	박 영 길			
	간 사	ਜੇ 등 ਦ	시 민 국,	시민보건	
시민보건	위	શ	보 건 소,	위원회실,	
위원회		- 김 유 현,	공력제1동,	공백제1등사무소,	圣整包
	김 충 환,	이 용 원.	도화제2등,	도화제2등사무소,	
	이 인 구,	이 중 일,	상 암 등	상암동사무소	
}	한대운	•			

### 나. 감사일정

감 사 일	감 사 대 상	갑 사 장 소	감 사 방 법
'97. 11. 26. (宁)	상 알 동	상암동사무소	중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서류 감사
'97. 11. 27. (号)	도 화 제 2 등, 공 덕 제 1 등	도화제2등사무소, 공맥제1등사무소	중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서류 갑사
'97. 11. 28. (音)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시 민 보 건 위 원 회 실	중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서류 감사
'97. 11. 29. (里)	위 생 파, 산 업 파	시 민 보 건 위 원 회 실	중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서류 감사
'97. 12. 1. (程)	환 경 과, 청 소 파	시 민 보 건 위 원 회 실	중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서류 갑사
'97. 12. 2. (對)	보 건 소	시 민 보 건	중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서류 감사

## 5. 주요감사 내용

감사대상기관	추 요 감 사 내 <del>용</del>
사회복지과	○ 재해용품 관리 실태
	O 저소득층 자매결연사업 운영 실태
!	○ 직업소개소 지도 감독 실태
<u>.</u>	○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자 관리 실태
	○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실태
	○ 취로사업 운영 실대
	○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 실태
가정복지과	O 노인건강진단 운영 실태
	○ 노인 취업암선 실태
	○ 청소년득서실 운영 실태
위생과	○ <b>혀</b> 가신 <b>경후 반려된 위생업소에 대한 불법영업 단속 대책</b>
	〇 목욕업소 지도 감독 실태
	○ "좋은 식단제" 운영 실태
	〇 자등판매기 위생판리 실태
	○ 집단급식소 위생검사 실태
	〇 무허가 소규모음식점 위생검사 실시 대책
	〇 두부재조업체 위생관리 실태
	○ 위생과 업무추진비 격경 사용 여부 ·
산 업 과	○ 게인서비스요급 관리 실태
	〇 농산물 도농직거래 실태
	○ 중소기업욕성자금 운영 실태
	〇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대책 및 이행 방안
	○ 광견병예방접종를 제고 방안

감사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환 경 과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관리 방안
	○ 유튜저장탱크 관리 실태
	○ 정화조 관리 실력
	○ 정화조청소대행업자 지도 감독 실태
	○ 무허가 공해업소 단속 실대
청 소 과	○ 마포구 제활용센타 운영 실태
	○ 제활용품 대면수거 실태
	○ 청소수하차 관리 감독 실대
	○ 환경미화원 관리 실태
1	○ 완경미화원 사역카드 관리 실태
	○ 쓰레기무단루기꽈대료 체남자 관리 실태
	○ 공중화장실 판리 실태
	○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한 홍보 대책
	○ 건설패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 관련 예산 미집행에 대한
	집행 대체
보건소.	○ 보건소내 안내표지판 부착 여부
	○ 보건소 업무에 대한 홍보 대책
	○ 방역소득약품 관리 실대
	○ 병·의원격출물 관리 실태
	O 국민건강중진법상 위반행위 단속 대책
등 사 무 소	○ 의료보호대불급 관리 실태
	○ 옵식물쓰레기 감량화 홍보 실태
	○ 중량당 가격표시제 점검 실태
ļ	○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
	○ 쓰레기무단루기과대료 계납자 관리 실대
	〇 긴급구호양곡 관리 실태
	○ 부당인 단속 실태

감사대상기관		ይ ች	감	사	ч	8	
	O 노인 취업	알선 대	<b>체</b>				
	O 광견병예 <sup>1</sup>	항접종급	제고 방	안			
	O 개인서비:	스요금 편	리 실태				
	○ 청소수하기	<b>사 관리</b> 4	일 태				•
	O 노인교통	<b>구당 전액</b>	지급 병	<b>발</b> 안			
	○ 취로중 관	리실태					
	○ 생활보호□	1상자 관	리카드	판리 4	耳耳		
	O 노인건강?	보 <b>단 운영</b>	실태				
	○ 환경미화 (	신 <b>사역</b> 카	드 관리	실태			

###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시경 및 처리요구사항

#### (1) 시민국 소관

(가) 사회복지과 소관

- 등에서 보판증인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를 재때에 작성하지 않는 등 카드 관리가 부실한 바, 확인하여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저소득층 자매결연 명단이 장부상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자매결연 이후 실격에 대한 기록이 없어 전시효과적인 행정이 될 우리기 있음.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 외료보호대불급 체납액에 대한 상환물('97.11.3.현재)이 19.62%로 때우 저조한 실정임, 외료보호대불급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체납치분" 규정 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 장기 체납자에 대하석는 외료보호 정지와 결손처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취로증을 취로자가 휴대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에서 일괄 보관하여 한꺼번에 작성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철저한 관리 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나) 가정복지과 소판

- '96년도에 노인건강진단비로 국고보조급 7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불용액이 294,740원임. 등 보조금을 때면 사용치 못하고 반납하고 있어 연차적으로 보조금이 감액되고 있는 바,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 청소년독서실 운영 관련 '98년도 예산핵을 보면 '97년 대비 77%가 증가한 반면 학생이용률은 '95년도 이후 연평균 20% 정도가 감소하고 있음.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을 수립하여 청소년 공부방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 특히 위치선정에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용률이 저조한 망원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98.1.15.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

#### (다) 위생과 소판

- 목욕업소 수질검사시 업주에게 유리하게 채수하는 경우가 있는 바,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부정의 소지가 없도록 할 것.
- 허가신청후 반려된 위생업소가 반려된 기간중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가 있는 바,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할 것.
- 자동판매기 위생 판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 각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두부제조업체에서 포르말린을 사용하여 부패를 방지하는 사례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바,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 무허가 소규모음식점에 대한 위생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량하고 비위생적인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위생과 업무추진비 지출시 현금 지급('97.1.20. 위생감시활동을 위한 50만 원 정액 지급 외 2건)한 사례가 있음.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출될 수 있 도록 할 것.

#### (라) 산업과 소판

-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에 있어서 각동마다 통일된 양식이 없고 관리도 부실 한 바, 확인하여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농수산물 원산지표지제가 홍보 부족으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바, 식별이 될 수 있도록 홍보지를 업소에 불이는 등 이행 방안을 강구할 것.
- 광건병예방접종을 조사된 개의 20%정도만 실시하였는 바, 방견시 문제가 발생될 엄러가 있으므로 대책을 수립하여 모든 개에 접종시킬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할 것.
- 12월1일 현재 우리구의 도시가스 사용가구수는 전체의 69%로 도시가스사업기급 격립급은 10억7천만원임.('96년도 용자급은 4737만원, '97년도 4020만원으로 용자실격이 저조함) '98년도 적정시기(도시가스 사용가구수 70%달성시)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여 격립급을 타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마) 환경과 소관

- 경화조 청소후 청소비와는 별도로 사례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바, 교육을 실시하여 항후 이러한 행위가 없도록 할 것.
- 일반주택에서 불법으로 유류저장맹크를 설치하여 유류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정확히 조사하여 조치토록 할 것.
- '93년 이후 환경개선부담금 채남(자동차·시설를 포함) 현황을 보면 22,810 건 926백만원으로 징수율이 89.7%로 낮은 실정임,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중합적인 대책을 가구함 것.
-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판한법률에 의한 정화조의 설치기준과 정화조의 구조, 규격, 성능 등에 미달하는 정화조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화조 관리 업무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종합적인 정화조 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98.1.15.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

#### (바) 청소파 소관

○ 청소수하차 수리비를 수하차 수량 및 수리 여부 확인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지급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공중화장실 기물 파손이 많은 바, 파손 실태를 파악하여 수리할 것이며, 파손 즉시 수리할 것.
- 완경미화원이 근무증 음주를 하거나 팀을 요구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중종 적발되고 있는 바, 근무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조치토록 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 쓰레기무단투기파테료 체납자 관리에 있어 등에서는 체납여부 확인이 안되고 있음, 구에서 경기적으로 등에 체납자 명단을 통보하여 등에서 체납자 관리 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
-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한 홍보실적이 때우 미흡함. 효율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건설페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 관련, '97년도 세출예산에 장비구입비와 시설비로 16억원이 개상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전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음. 무리한 사업계획과 관계기관과의 소극적인 혐의등으로 막대한 예산을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시키는 행위가 제발되지 않도록 할 것.

#### (2) 보건소 소판

- 병·외원이 적출물을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 바,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 토록 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 국민건강중진법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이 매우 낮음. 효율적인 단속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등에 보관증인 방역소득약품의 관리가 때우 부실함. 방역소득약품은 독극물 인 점을 감안하여 시건장치 마련 및 철저한 통제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 건물 각층에 건체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 몸이 불편한 민원인이 안내표지판을 보고 편리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97년 3/4분기 보건분야 여론조사 결과 지역주민 대다수는 아직도 보건소가 예방접종과 전염병 관리를 해주는 곳으로 잘못 인식하고, 조사대상증 아현 진료소 개소를 모르는 경우가 60.5%나 되고 있어 홍보대책이 결심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3) 동사무소 소관

- 중당당 가격표시제를 장부상으로는 업소에서 이행하고 있는 걸로 기재되어 있으나 업소에서는 g당 표시를 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음. 실제 이행 여부 를 점검하여 이행토록 조치할 것.(상암등, 공력제1등)
- 환경미화원사역카드 판리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날인란에 청소담당의 날인을 하거나 며칠을 모아서 한꺼번에 날인한 흔적이 있는 등 관리가 소홀한 바,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상암등, 공력제1등)
- 광건병예방접종을 조사된 개의 20% 정도만 하고 전수조사도 정확히 하지 않아 방건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바, 모든 개에 접종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상암등, 공력제1등)
- 개인서비스요금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바, 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조사 할 것. (상암등)
- 청소장비대장을 만들어 청소수하차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장이 없는 등 관리가 부실한 바, 대장을 만들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상암등)
- 충량당 가격표시업소를 장부에만 기재하고 점검 실적이 없는 바,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이행토록 조치할 것.(도화제2등, 공력제1등)
- 노인교통수당이 홍보 부족으로 미지급분이 발생되는 바, 전액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도화제2등)
- 취로증을 취로자가 휴대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에서 일괄 보관하여 한꺼번에 작성하는 등 관리가 부실한 바, 방안을 강구하여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도화제2등, 공백제1등)
- 동사무소 창구에 마련된 노인 취업알선 실적이 거의 전무한 실정임. 개선책을 마련하여 노인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공력1등,도화2등, 상암등)

#### 나. 건의사항

국민건강중진법상의 위반행위 단속시 보건소에는 사법권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바,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철저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 다. 처리의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가 시정 처리하고 그 결과를 1998.1.20.까지 마포구의회에 보고토록 할 것. 1997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1997. 12 .)

都市建設委員會

## 1997年度行政事務監結果報告書

#### 1. 監査 目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점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점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합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1998년도 예산심의를 심 도있게 심사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 2. 監查 期間

○ 1997. 11. 26.(수) ~ 1997. 12. 2.(화) [7일간]

#### 3. 監查實施對象機關

- 마포구청( 도시정비국, 건설국 )
- 동사무소( 신공덕동, 도화1동, 망원2동)

### 4. 監查實施經過

가, 감사반편성

구분	감사	위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사무원
도시건설	위원장	박상수	도시정비국,	도시건설	바춘배
위원회	간 사	쾌재선	건설국	위원회실	
	<del>- 위</del>	<b>₽</b> } −	신공덕동	동사무소	
	권오법,	김영식	도화1동	·	
	박동칠,	배상대	망원2동		
	유용봉,	윤명규			
	이번규,	점성우		!	
	한편덕.				

##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부서	감사장소	감사방법	яJ	ম
'97.11.26.(수)	주 택 과 재개발과 도시정비과	도시건설위 원회실	현황보고청취 자료요구 정책질의		
'97.11.27.(목)	교통해정과 교통지도과 건 축 과	<b>"</b>	"		
(97.11.28.(音)	건설관리과 토 목 과	77	27		
'97.11.29.(토)	하 수 파 공원눅지과	77	77		
'97.12. 1.(월)	도화1동 신공덕동	동사무소	n		
'97.12. 2.(卦)	망원2동	"	n		

### 5. 主要監查實施內用 가. 소관별심시내용

1) 도시정바국소란(주택과,재개발과,도시정비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건축과)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구 백 과	ㅇ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주거대책비 지급현황
	ㅇ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문제점 및 향후대책
	ㅇ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 방지 및 사전예방 대책
	ㅇ겐세융자금 홍보 미흡 및 미상환자 회수 대책
	ㅇ건축현장 지도 감독 및 안전망 설치 문제점과
재개발과	항후 대책
	ㅇ재개발사업 추진시 구역변경동 민원 발생에 대한 대책
도시정비과	○물출간판 허가후 허가기간내 단축 이유
	ㅇ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향후 계획
	o 관내 초등학교 주변 <b>웹스설치 부</b> 적정 및
	일방통행구역이 지역여건에 맞지않게 지정되어
교통행정과	있는 곳에 대한 향후 대책
	o 판내 일방통행도의 불법주차 단속
	ㅇ무허가 자동차 정비업소 폐기물 배출 단속에 대한
	유판과(환경과)와 유기적인 단속대책 강구
	ㅇ불법주정차단속꽈태료(50만원)아상 고역 상습 채남자
	징수에 따른 재산압류 업무에 만전을
	기할것.
	ㅇ공익근무요원 교육 및 기강확립 철저
교통지도과	· 공익근무요원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시 관내를 이빨
	하여 단속 금지
	· 건축물 부설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 설치의 문제점
	ली पार हिने पान
	· 건축물 준공완료후 불법 용도변경 주차장을 검포등으
건축과	로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대책
	ㅇ장기 미준공건물에 대한 대책
	·건축 러가는 행정 부서에서 하고, 그에따른
	공사(데미콘)차량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있어 주간 화
	물 차량 도심통과 통행제한 단속으로 공사를 야간에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점과 향후 민원 대책
	्राप्त पर विधन ए स्वासना अने राच भाव

### 2) 건설국소란(건설관리과,토목과,하수과,공원녹지과)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건설관리과	아가로판매점 허가 용도 이외의 판매행위 단속 및 향후 대책 아도로검용료 부과 소급적용 실패 아잡종 재산중 사실상 하천부지에 속한 검용료 부과 실태 아유선방송 유선주 설치 현황
互导과	<ul> <li>구 상용인부임 지급</li> <li>'97.1월부터 10월30일 각종공사 예산 지출(발주)내역</li> <li>'96년도사업중 사고이월 변황</li> <li>의근 3년간 발주한 공사중 의지업체와 우리구 관내업체가 수주한 변황</li> </ul>
하수과	<ul> <li>○구 상용인부임 지급</li> <li>○'97. 1.~10. 30일까지 각종공사 예산내역과 지출(발주)</li> <li>현황</li> </ul>
공원녹지과	ㅇ예산으로 식재한 각종나무 식재후 사후판리 현황 ㅇ하절기(5∼6월) 수목 해충방지 대책 ㅇ구 소유 해충 방지 각종장비 관리 실대

### 6. 監查結果處理意見

가. 시점 및 처리 요구사항

#### 1) 도시전비국소관

### 가) 주력파소관

- 주거환경 개선의구내 주거대책의 지급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 되는 사례가 있는바,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할것.
- 신발생 무허가 건물 사건예방 단속이 제대로되지않아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주민에 대한 홍보강화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주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것.

- 저소목층 전세금 용자 실적이 저조한 바, 적극적인 흥보를 통하여 필요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것.
- 저소득층 전세융자금 장기 미상환자 판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음, 미상환자에 대하여 납부목촉뿐만 아니라 보증인에게도 상환이행고 지동을 통하여 미남자에 대한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 '97년도 예산에 재건축 홍보지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0월경 1회 발행된바 있음, 본 홍보지는 년초에 발행하여 당해년도 재건축 소식이나 법령등 필요한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시점로록 할것.

#### 나) 세계발과 소판

- 관내 재개발 건축현장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장 안전망 설치등 현장 확인 행정을 통하여 민원발생소지를 줄 이고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 합것.
- 재개발사업 추진시 사건에 사업 타당성 검토 미비로 사후 구역번 경품으로 입한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 바, 재개발사업 추진 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시행 할 것.
- 재개발 소식지 발간과 관련하여, 배포후 홍보효과에 대한 분석을 건혀하지 않고 있음. 재개발에 판심있는주민에게 보다 필요하고 신 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효과 분석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것.
- 주택제개발 구역지정등 도시계획안 공람공고시 주민들이 다수 접 할수 있는 일간지를 선택하여 이해관계인들이 의견제출을 할 수 있 도록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주민들이 지역개발 사업에 대하여 사 전에 추진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개선 합것.

#### 다) 도시장비와 소문

- 불법 광고물 및 무허가 물출간만 단속은 거리질서 확립 및 도시 미판증진을 위니 지속적으로 디루어 쳐야 함에도 켁기에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시점로록 할것.
- 도심재개발 구역 변경지점등에 따른 공합 공고시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일간지를 선택하여 이해판제인들이 의견제를 할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부여하고 민원발생의 소지를 줄일것.
- 채비지 대부료와 변상금에 대한 짐수실적이 매우 저조함, 록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징수율을 높일수 있도록 할것.

#### 라) 교통병정과 소관

- 초등학교 주변 주차급지용 펜스 설치시 행인 및 차량통행동 주 변환경동을 고려하여 설치 하도록 하되 주민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할것,
- 일방통행로 지정은 주변환경과 맞도록 검토 하고 사전에 주민의 견수럼 및홍보를 통하여 민원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
- 관내 일방통행로에 장기 불법정차로 인하여 일방통행로 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안되는 지역이 있는바, 이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 집 할 것.
-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계획수립시 사건검토가 불충분하고 형 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태가 지적되고 있 는바 사전에 충분한 라당성 조사와 경제성등을 분석하여 동 사업 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것.

#### 마) 교통지도와 소판

- 주정차 꽈배료 50만원이상 고액 및 상습채남자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채남자 재산압류등 특별대책을 수립시행 할 것.
- 건축물 부설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 판리 업무에 설치를 기하 역 불법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수림 할 것.
- 공익근무요원들의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보조시 주민에 대한 불친절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단점한 복장 으로 친절한 근무 자세가 점립될 수 있도록 교육을 될저히 하기 바람.
- '97년도 불법 주정차 꽈래요 징수율이'97.10.31현재 38.7%보 배우 저조함.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을 감구 할것.

#### 바) 건축과 소판

- 준공 이후 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하여 식당, 점포 등으로 사용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등 대책을 강 구할것.
- 관내 장기 미준공 위법 건물이 증가 하고있는 바. 위법 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저한 대책을 강구 할 것.
- 건축 허가는 행정부서에서 하고, 그에 따른 공사(해미콘)차량단 국은 경찰에서 하고 있어 주간 화물차량 도심봉과 통행제한 단속 으로 공사를 야간에 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유판기판과 협조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대책을 수립 보고 할 것.

○ 동접기 대형 공사장 및 사설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 화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 조치함으로서 구민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 2) 건설국 소판

#### 과) 건설관리파 소판

- 도로점용료 부과 업무와 관련하여 진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는 바,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 할것.
- 관내 노상 가로판매점 허가의 음식물(역복기,우등,오팽)등 노상조리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제획을 수립하고 단속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특히 신촌역과 귀빈로 주변 도로변에 비위생적인 음식물을 팔거나. 상품을 진열판매하는 노검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취약지역에 대하여 정비대책을 마련 할 것.
- 공공용지(도로.하천)에 대한 '96 ~ '97년도 점용료 채남율이 '97년도 13% '96년도 9.0%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 할것.

#### 나) 토목과 소판

- 토목과 상용인부의 근로기준법(제54조)에 의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지급대책을 강구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할것.
- 각종토목공사시 당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이 매년증가하고 있는바, 공기부족과 보상혐의 지 연등으로 사업이 이월되지 않로록 년초에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 립하여 시했 합건.

#### 다) 하수와 소환

- 하수과 상용인부의 근로기준법(제54조)에 의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지급대책을 감구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할것.
- 각종 소규모 공사시 원청업자가 합법을 가장하여 하청 업자에 개 공사를 맡기는 행위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원청업자에게 제재 조치를 강구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해가 없도록 시점 할 것.
- 우기철 수혜로 인한 도로와 가옥침수시 비상연락 체계의 미비로 출동시간이 지연되고, 양수기등 장비이동이 쥑기에 공급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바, 우기철 종합대책을 제점검하여 비상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 라) 공원녹지과 소관

- 예산 사업으로 식재한 나무가 사후관리 부실로 고사 되는 경우 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할것.
- 하절기(5~ 6월)수목 병해충방제 업무가 계획성 없이 즉흥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철저한 계획수림으로 효율적인 방제 업 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림 할것.
  - 구소유 방재장비의 적저한 정비로 쥑기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방재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흥보를 강화 할것.

#### 3) 동사무소 소판

- 동사무소 공통
  - · 연말잔여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양호한 보도불력을 교체하는 사해가 많은바,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교체로록 할것.
  - · 불법주집차 단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집행이 동사무 소 전공무원에게 수당형식으로 일률적으로 집행되고 있는바, 이에대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할것.
  - · 보안등 관리대장 작성시 고장 신고후 즉시 수리한 것으로 일률 적으로 작성되어 있음, 신고후 미수리된 보안등도 발견되고 있 는 바. 보안등판리에 만전을 기할 것.
  - · 인도위에 차량이 불법주정차하여 보도불력이 파손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음, 적발즉시 단속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할것.
- 주차단속시 단속공무원이 동병하지 않고 공익요원에게 주차단속 율 닫기는 사례가 있음,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점조치 할것.
- 구정차 단속 스티커 수불대장 정리부실 및 결재 누락 등의 사례 가 많음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할것.

### **屮**。處理意見

○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점 및 처리 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또는 처 리하고 그 결과를 '98년 1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 한.